

# 第245回國會 (臨時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2月9日(月)  
場 所 建設交通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
2.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3. 政黨法中改正法律案

### 審査된案件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
2.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
3.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1

(12시20분 개의)

○**委員長 李在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立法調査官 田春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在五** 全甲吉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全甲吉 위원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인사말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들은 후에 각각의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金聖順 위원 나오셔서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順 委員** 정당법소위원회 金聖順 위원입니다.

정당법소위원회는 한나라당의 심규철 위원, 정의화 위원, 열린우리당의 김성호 위원 그리고 제가 참석한 가운데 1월 15일과 27일 두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획기적인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구당제도의 완전 폐지입니다.

법 제3조를 개정하여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토록 하여 현재의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연락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지구당을 대체할 수 있는 여하한 유사조직의 설치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지구당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 정당사에 획기적인 일로서 향후 정치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구당의 폐지에 따라 현재의 시·도지부를 대체하는 시·도당은 전국 16개 시·도 중 5개 이

1.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2.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3. 政黨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委員長 李在五**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關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당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3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의 시·도에 두도록 하고 시·도당의 법정 당원 수는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입당 및 탈당은 물론 정당의 대의기관의 결의도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이용자의 확산 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원이 되고자 입당하거나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입당 또는 탈당신고서 외에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입당신청 또는 탈당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의 대의기관의 결의도 입당 또는 탈당의 경우와 같이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당 또는 해산 등의 결의사항도 인터넷을 통한 투표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공직선거 후보 추천 시 당내 경선사무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근거규정 신설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사무는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정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당내 경선불복자의 출마 제한입니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내경선을 통하여 추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가 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여성의 원내 진출 기회 확대입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을 개정하여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여성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추천한 경우 정치자금법에 의한 공직후보자 여성 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당의 정책개발기능 강화 및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화입니다.

정당발전에 관한 연구, 학술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정당의 재정 및 회계처리의 투명화를 기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정책연구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소위에서 논의하여 정당법에 반영하기로 한 당내경선의 선거운동 방법 등 관련 조문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과 다른 안을 제안하셔서 토론을 끝게 되면 오늘 회의가 비생산적으로 진행되니까 가급적이면 소위원회에서 각 당 간에 합의해서 오늘 전체회의에 회부한 내용 중에 기록이 잘못됐다든지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誠源 위원님……

○**張誠源 委員** 민주당의 張誠源 위원입니다.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체로 4당이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구당에서 국민경선도 하고 또 당원들만 모여서도 경선을 하고 여러 경선을 하게 되는데 법 시행에 들어가서 바로 지구당이 폐지될 경우 각 당에 상당히 복잡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정당법이나 또는 현행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어느 지구당은 벌써 경선을 해 가지고 경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법 시행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당장 그런 것이 중단되는 현상이 벌어질 텐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당을 폐지하되 17대 국회의원 공천 경선이랄지 공천이 끝난 다음에 이 법을 시행한다고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金學元 위원 말씀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정당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요. 특히 지구당을 폐지하는 문제는 저희 당에서도 당론으로 폐지를 주장했던 문

제가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지구당을 폐지하게 되면 지구당에서 부위원장, 각 동협의회장, 무슨 지역장, 봉사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의 조직은 모두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두 가지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일하는 것이 우선 제일 대표성이지만 자기를 뽑아준 지역에 대한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을 수렴해서 이를 법안으로 만들고 또 정부에 반영해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링커역할을 한다든지 이러한 역할이 필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지구당은 없지만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구에 국회의원사무소를 두고 거기에 일정담당 보좌관, 홍보담당 보좌관 이렇게 해서 보좌관을 두세 명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당을 폐지하고 모든 조직이 다 없어지는데 제가 정당법소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사무소를 두는 것과 관계없이 지구당 폐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국회의원사무소까지도 다 폐지되는 개념으로 지구당 폐지 문제가 논의된 것인지의 여부를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金聖順 위원님, 金學元 위원님과 張誠源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지요.

○**金聖順 委員** 먼저 張誠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고 각 정당이 빨리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여기에 맞추는 안이 있고 정당법 공포 일시를 언제로 두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공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월 말 이런 식으로 잡아서 공천이 끝날 때까지는 현행 제도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애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 방법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金學元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것은 지구당과 그와 유사한 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것이고 개인 사무소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구요. 개인 사무소를 뒤가지고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이 문제하고는 별

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李方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方鎬 委員**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이 되면 곤란하니까 큰 문제가 아니면 진행에 있어서 가능한 한 속도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聖順 委員** 정당법과 관련해서 공포 일시를 좀 조정해 주시는 것이 각 정당이 공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당법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 그 부분은 다음 축조심의할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위원 나오셔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위원**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오세훈 위원입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제1차 정치자금법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오늘까지 본 위원을 포함하여 한나라당의 박종희 위원, 李在五 위원, 새천년민주당의 金孝錫 위원, 黃昌柱 위원,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위원과 함께 열 차례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범개혁이 제출한 안과 의원발의 법률안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합의 보고된 내용은 생략하고 추가로 합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당후원회와 시·도당후원회에 대해서는 법 시행 2년 후에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중앙당과 시·도당후원회의 폐지 이전의 존속기간 중에는 연간 중앙당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은 50억 원, 시·도당후원회는 5억 원, 대통령선거 경선평비참여자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당대표 경선참여자는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의 중앙당 기부한도는 1000만 원, 시·도당 및 개인후원회 기부한도는 500만 원으로 하되 개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고액기부자 명단공개로서 중앙당후원회의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초과, 시·도당과 개인후원회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초과는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고보조금의 배분과 관련해서 중앙당 50%, 정책연구소 30%, 시·도당 10%, 여성정치발전기금 10% 등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정치자금법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현재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대해서 현재는 100% 소득공제인데 이것이 세액공제가 되면 세수감이 굉장히 큼니다. 약 100만 명이 10만 원씩 냈다고 볼 때 세수감이 한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의 국민정서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우선 한 5만 원 정도로 받을 줄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재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정부와도 많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5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하고는 좀 구별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각 당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돈세탁방지법 쪽에 개정 권고를 하기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돈세탁방지법상에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자 그리고 그것을 국회의 다른, 재경위나 법사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고액현금보고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차원에서 권고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소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五** 오세훈 위원, 지금 천정배 위

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오세훈 위원**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권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돈세탁방지법에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입법을 하기로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그것을 국회 내 해당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하셨군요.

○**오세훈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천정배 위원** 잘 하셨습니다.

○**金孝錫 委員**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金孝錫 위원, 설명하십시오.

○**金孝錫 委員** 현재 돈세탁방지법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FIU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00만 원 한도를 없애고 금액에 관계없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FIU에 통보하도록 하고 현금거래 2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통보하도록 이렇게 제가 안을 제출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의견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방금 정의화 위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4당 간사 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쳤던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위원 나오셔서 공식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선거법소위원회의 천정배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서 선거법소위원회가 제안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법소위원회에서는 총 11차례에 걸쳐서 의원발의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 및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안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 결과 지난 1월 30일 제1차 전체회의 시 합의보고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축조심사하였고 이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으로 성안하여 전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1월 30일 제1차 회의 시 보고

드린 합의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선거연령과 국회의원정수 등 일부 사항은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권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는 문제, 둘째 국회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관련사항, 셋째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누어 여성전용 선거구를 설치하는 문제, 넷째 대학 등 기관·시설에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등에 관해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는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문제와 둘째 정당의 국민참여경선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당원에 대해서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의 문제, 세 번째로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에 수리행위 등으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선거법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미합의한 것은 미합의한 대로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논의사항에 대해서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희룡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지금 논의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현재 합의사항만 오늘 의결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눠주신 미합의사항대비표를 보면 아까 천정배 위원이 말씀하신 미합의사항들이 있고 끝에 보면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소위 철새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직을 박탈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는데 만일 이것에 대해서 다수결로 표결을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모두 현행조항들이 그대로 있고 그에 대해서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합의사항을 남겨놓고 계속 논의를 할 것인지, 오늘 미합의사항은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매듭지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일단 제 의견은 어차피 오늘 선거법에서 절차상 손을 댈 수 없는 문제는 별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사실상 그동안 수차례 반복해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차상 연장한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선거법 제일 뒤의 별표 외에는 모든 사항을 오늘 종결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상 의견 접근이 되었는데 법안에 반영하는 문제에서 천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당경선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보니까 아까 제안 설명한 정당법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홍보물과는 별도로 정당경선선거인단에게 홍보물 1회 추가 발송하는 문제라든가 합동토론회, 합동연설회가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논의해야 될 사항 중 인터넷 실명인증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나누어드린 추가논의사항 자료 중에서 상위 50개 인터넷언론사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좁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李在五 위원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제안하셨던 뇌물사범, 정치자금사범의 경우에도 지금의 선거사범처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각 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실상 의견접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사항으로 이 회의에 상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후의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간사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공무담임권 등 제한과 관련하여 추가 논의사항은 5쪽에 있는 내용을 추가하되 법 문안은 간사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합의가 안 된 부분은 미합의로 남겨놓고 정개특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미합의는 미합의대로 넘기겠다고 한 말은 미합의된 부분은 현행 선거법대로 넘겨놓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각 당에서 나오면 그것은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면 됩니다.

오늘 사실상 3개 법안은 현재 합의·논의된 상태로 전부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원희룡 의원**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리고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사항이 선거구 국회의원정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정개특위에서 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각 당 간에 당론으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각 당의 당론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개특위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당이 합의가 되면 추후에 개정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별표를 수정해서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의화 위원**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경조사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것만은 고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五** 경조사부분은 조향세트부분 아닙니까?

○**정의화 위원**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아마 4당 간사회의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천정배 위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천정배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소위 내에서 정의화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정치개혁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경조사에 관한 우리 고유의 관례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행법대로 1만 5000원 이하의 매우 간략한 물품조차도 축의·부의대신 제공치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음성적으로 축의·부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어떻든지 돈 안 쓰는 선거, 부패 없는 정치를 혁명적으로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좀 어렵지만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어서 선거법소위에서는 이른바 조향세트와 같은 물품을 축의·부의대신 기부하는 것도 완전히 금지시키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화 위원** 위원장, 제가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첫째 이것을 없애는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둘째 우리가 24시간 근무하라는 이야기는 24시간 놀아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이 꼭 국회의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 의원에게도 해당되는데 실제 제가 지역에서 보면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현찰을 주는 경우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도 정말 만부득이 인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것을 주는 것까지 없앤다면 굉장히 고뇌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향세트 하나나 7000원짜리 앨범 하나로 때우면서 “국회의원이 참 사람 구실 못해서 미안한데 그러나 이 이상 할 수 없는 법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해서 넘어 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를 못 준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합의가 안 된다면 표결을 해서라도 이것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유시민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유시민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거구민의 혼사가 있는데 왜 앨범을 줘야 됩니까? 그런 것을

안 주면 왜 국회의원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이 됩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 선거구의 유권자가 초상을 당했는데 거기에 조향세트를 보내지 못하면 어째서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것이 됩니까? 저는 공직후보자로 출마해서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하등의 정치적·도덕적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 왔기 때문에 해 온 것이 사실인데 이것은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조향세트 보내는 것도 한 달에 100개, 200개라면 돈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도 있고 축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친밀한 사이라서 조문을 해야 된다면 몸으로 때워서 조문을 하면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막으면 음성적으로 돈을 주는 것을 더 부추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것을 법으로 막아놓고 앞으로 정치인들이 초상집이나 결혼식장에 뭐 내미는 것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의화 위원 내 발언에 대한……

○委員長 李在五 이 문제는 토론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의화 위원 토론보다도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시정해 드릴게요.

지금 유시민 위원 이야기는 지역구의 모든 사람에게 보낸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고 안 가고는 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이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8년간 국회의원하면서도 한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호도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그 의원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지 모든 지역구민에게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말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토론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金學元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소위에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내가 아까 소위 결과를 발표할 때 잠깐 못 들었는데 제가 소위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경사일 때는 앨범이고 뭐고 안 보내도

상관없는데 애사여서 문상을 줬을 때 그동안에는 조의금을 얼마씩 보내도록 했던 것을 지난번에 일대 개혁을 해서 1만 5000원 이하의 물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 조향세트로 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그동안 상당히 착근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는 않겠지만 국회의원도 인간인 이상 문상을 가고 또 문상을 가지 못할 때 의사표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사망해서 문상을 하면서 조향세트까지 주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수결로 표결해 나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제가 그렇다고 실력으로 그것을 막을 일은 없으니까요. 제가 전체회의에 보고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고 되었는지 잠깐 놓쳤는데 그 부분은 소위 때도 제가 반대를 했고 또 평소에 TV 토론 때도 반대를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표결에 부쳐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소위에서 결정한 것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예, 설명하십시오.

○정장선 위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 가장 큰 취지는 무엇이나 하면 아마 이번 총선이 끝나면 신인들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한나라당에서는 후원회 자체를 없애자고 했지만 소액다수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집회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 법인도 전부다 후원회를 못하게 해 놓아서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후원금 들어오는 것이 특히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의금과 부의금을 그대로 다 내버려뒀을 경우…… 우리가 지역구에 오는 것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많게는 거의 한 사오천 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지역구에 보면 상가가 하루에 네다섯 집이라고 들어옵니다. 거기에다 결혼식이다 칠순이다 다 보내기 시작하면 수천 만 원의 돈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돈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들어오는 것은 엄격하게 막았을 경우 음

성자금의 횡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여 주자는 원칙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뜻보다도 이런 큰 틀에서 나가는 것을 줄여놓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음성자금이 없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五** 李方鎬 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方鎬 委員** 그 문제는 지금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조의금을 줄 때 3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해서 줬습니다마는 그 뒤에 그것을 없애고 조향세트로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돈을 안 주고 그냥 조향세트만 주니까 우리가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서 조향세트 하나 주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조향세트도 없이 그냥 문상만 하고 아니면 조건, 축전만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소 국회의원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또 한 1년 지나면 현실적으로 착근이 돼서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몸으로 배우고 자기 능력으로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유권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은 끊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돈 들어올 곳이, 후원금 그 자체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이제 출구를 줄여야 됩니다. 이것도 보면 최소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천몇백만 원 아닙니까? 이것도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고리를 끊자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의 합의안을 존중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니까요.

○**정장선 위원** 저희 정치자금법소위에서 축의금 금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요.

○**정의화 위원** 표결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에서 완전히 합의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표결로 해 주어야지요.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표결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위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소수의견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선거법소위에서 논의된 것이고, 저는 선거법소위원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했는데 소수의견을 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수가 찬성한다면 그냥 표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소수의견을 달아서 표결해 주세요.

○**委員長 李在五** 표결하는 것도 좋은데, 소위에서 합의된 것인데 한 안건, 한 안건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달았다고 해서 전체 회의에서 표결하자고 하면 회의가 생산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개진해서 합의되어 올라왔으면 전체 회의에서는 합의된 대로 따르는 것이 회의의 방법이지, 자기 의견이 소위 합의안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전체 회의에서 표결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소위에서 일부가 반대하면 소수의견을 달아서 전체 회의에 보고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표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법 원리 아닙니까?

○**원희룡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원희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희룡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도 그렇고 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되었는데 지금 소위원회 합의사항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열한 차례, 나중에 12차 소위를 하는 동안 조문을 놓고 무엇이 합의사항이고, 무엇이 미합의사항이냐에 대해서 일일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민련의 경우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당무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셨는데, 물론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큰 당들에 의해서 다수 의견이 모아지고 합의사항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분명히 위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진행상에 있어서 金學元 위원님이 줄기차게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대신 지금 전체 회의에서 다시 원래 의견으로 가서 이런 반대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은 좋으시지만 합의된 것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다 달자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상 없었거든요. 일단 소위의 운영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사항으로 온 것이 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李在五** 정의화 위원님, 이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까?

○**정의화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가깝습니다마는 소위 중심으로 특위를 운영하자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특위 위원이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를 듣고 합리성이 있으면 여기서 논의에 부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만 하신다면 특위 전체 회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체 회의는 거의 거수기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金學元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계셨고, 지난번 소위에 넘어갈 때도 제가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를 거쳐서 표결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의 없이 되면 나도 큰 이의를 걸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자리를 뜬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얘기는 내가 없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없더라도 회의를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다수결로 통과되면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지, 다 합의되었다고 해서 이의를 걸지 못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전체 회의에서 표결할 것도 없고 소위에서 표결하면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2선 국회의원이지만 국회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때 제가 그 얘기를 철회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표결하면 되잖아요.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五** 알겠습니다.

제가 국회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관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모든 것을 줄여 가자고 하는 판인데 조

항세트 등의 경조품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더 우세한 것 같아서 표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인데, 좋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표결해야지요. ○**정장선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소위에서 소액다수제로 완전히 바꾸고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큰 원칙 중 하나가 선거법 소위에서 축·부의금까지 다 없었으니까 소액다수로 가도 괜찮다는 기초 속에서 논의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좋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유시민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표결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 얘기가 나온 흐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법에서 일체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상시적으로 다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금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친족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해서만 선거법에 몇 개를 명시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전부 일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법체계상 보더라도 거기다 갑자기 ‘초상집의 조향세트는 예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의 품위가 있지요.

○**委員長 李在五**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현행대로 경조사 축·부의금에 대해서 1만 5000원 미만의 금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두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요?

○**金學元 委員** 반대하시는 분도 물어보셔야지요.

○**委員長 李在五** 그러면 축·부의금을 없애는 소위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보셨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합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희룡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李在五** 원희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희룡 위원** 아까 천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는 개정안과 관련해서 좀 작은 내용입니다마는 하나

추가할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인터넷방송토론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데 인터넷방송토론위원회는 위원이 11인으로 구성되는 반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계 법조계 방송계 선관위 등등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委員長 李在五** 간사회의에서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11인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원희룡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張誠源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일단 소위에 참여해서 소위에서 반대 견해를 밝혔습니다마는 소위에서 합의된 안은 90일, 3개월 이후부터는 의정보고를 못 하도록 합의를 본 바 있는데 그 합의 이후에 정개특위 위원님들께서 소위의 합의에 대해서 반대견해를 표명하시는 분도 계셨고, 정개특위 위원이 아닌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라고 규정하면서 정개특위에서 재고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것을 대변한다고 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정보고일이 90일 이전부터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비후보와 동등한 기회를 줘서 예비후보와 현역의원들과 균형을 맞추자 이런 뜻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 기간이 너무 짧다,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12월 중순에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보고를 충실히 할 충분한 시간적인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60일 이전부터는 못 하도록 한 1개월간 더 연장을 시킨다든지, 또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는 실제로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현판을 내걸고 자기의 이력을 충분히 소개한 명함을 들고 거리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실제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냐 다름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의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개특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가부간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이석하면 의결을 못 합니다. 이석을 하지 마시고 각 당 간사님들께서는 오늘이 정개특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 다 참석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지금 나간 위원님들 다 들어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위에서도 충분히 제기되고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합의되어 올라온 안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여기에서 재론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견개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張誠源 委員** 그것도 표결에 붙입니다.

○**유시민 위원** 표결하려면 찬반토론도 하셔야 되는데요.

○**委員長 李在五** 그래서 제가 표결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하나하나 표결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의가 생산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張誠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3개 법안을 개혁적 차원에서 통과하는 마당에 그런 부분은 현역의원들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석 위원** 張誠源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관한 부분은 관련 소위에서 심층 토론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으로 봅니다.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역과 비현역 국회의원을 동등하게 일률적으로 형식화해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논란 가운데서 또 張誠源 위원님께서 참여한 소위 관련 회의에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위 안은 확정된 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개특위 2차 회의 때 개의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에서 합의한 것 자체를 한 번 뒤집기 시작하면 전부를 다 뒤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미비점이 있는 부분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다음에 새롭게 구성되는 17대에서도 이 선거법안에 대해

또 다시 개정안을 내고 적절한 미비점을 보완·제도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큰 흐름에서 가는 대의와 원칙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한 것입니다. 소위 안으로 표결 없이 확정하는 것이 회의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좋습니다.

○**천정배 위원** 제가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위에 참여해서 논의했습니다마는 실제 문안을 보니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고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선거법 제34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4페이지입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목요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아시겠습니다. 이 제34조제2항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35조가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인데요, 제2항1호를 보시면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선거일)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까 그 부분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그 선거일이 민속절이거나 공휴일이거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목요일로 재·보궐선거일을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목요일 다음이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우리가 토요일로 재·보궐선거일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토요일은 그 다음날이 일요일입니다. 공휴일이 돼서 언제든지 그다음 주 토요일로 넘길 텐데 그러면 또 그 다음날이 공휴일이니까 선거일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데, 지금 토요일이 공휴일인가요? 현재 토요일은 공식적인 공휴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민속절인 경우 또 토요일 자체가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에 선거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그러니까

금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금, 토, 일이 연휴가 돼서 투표율이 낮아질 테니까—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부분을 빼서 보궐선거 조항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위원** 타당한 지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리 있는데 체계와 자구수정에 관한 것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리고 끝으로 간사 간에 합의가 된 것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재임 중에 업무와 관련해서 뇌물 등에 관련되었을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했지요? 10년으로 합의된 것이지요?

○**원희룡 위원** 그렇습니다.

○**유시민 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 교섭단체에 속하신 위원님들께 간단히 의견들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미합의사항 가운데 선거연령 인하문제에 관해서 최종적인 교섭단체들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 당론이 18세입니다마는 19세까지 절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19세로 인하하는 것에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할 여지없이 확고한 반대이신지의 여부를 이 자리에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법 및 정당법 추가논의 사항’ 가운데 선거법 관련 인터넷 실명제문제입니다.

원희룡 위원께서 1, 2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3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조항이라 합의가 잘 안 되면 도입하기 어려운데요, 제3안 ‘자율적·선언적 규정만 두는 안’이 저희 당의 안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굳이 과태료 조항을 덧붙여서 언론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이 법안을 꼭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여부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이것을 추진해 오신 분들께 확인만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유시민 위원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간사회의에서 각 당의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은 각 당에서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각 당의 견해와 의견을 밝힌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희룡 위원**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발언을 유시민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위원회가 이것은 의사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소위에서는 사실상의 의견접근을 하고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당론이 달라서 된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관련업계 그리고 행정자치부 또는 신용정보제공기관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문완성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도입을 못 한다면 인터넷선거운동 전체에 대해서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맞물려가기 때문에 인터넷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이것에 대한 보완장치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표결을 통해서 어느 제도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 문제는 수차 토론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유시민 위원**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처리를 해야지요.

○**원희룡 위원** 표결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在五** 미합의된 것은 일괄적으로 미합의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합의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위원** 그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원희룡 위원이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인터넷 실명제 문제가 미합의했다면 전체적으로 인터넷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정을 해야만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 부분이 지금 소위에서 미합의된 상태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위원** 다른 미합의사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위에서도 사실상의 합의가 다 됐는데 열린우리당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없는 상징적인 선언조항으로만 하자는 것인데 다른 3당 간에는 모두 합의가 됐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 전체위원회의 안으로 해서 이 제도를 오늘 통과시켜 줘야 관련업체들이나 기관들이 실무적

인 준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委員長 李在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유시민 위원** 원희룡 위원께서는 어느 안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원희룡 위원** 2안입니다. 50개 사이트로 제한하면 50개 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한 업무가 부가로 발생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업체들이 불명예스럽다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알겠습니다.

2안인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안’, 이것은 원희룡 위원 수정안입니다. 3안이 ‘자율적·선언적 규정만 두는 안’인데 이것이 유시민 위원 안입니다. 그렇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이 문제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소위에서 토론도 했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고 소위위원이 아닌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委員長 李在五**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이석을 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2분만 주십시오. 2분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하십시오.

○**천정배 위원**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인터넷상에서 흑색선전 그러니까 자기 실명도 밝히지 않으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든가 하는 등등으로 선거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범국민정개협안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고 저도 선거 때 흑색선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일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선거를 위해서만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선거 아닌 정치, 문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글을 올릴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 사이트에 선거에 관해서 글을 쓸지 아니면 선거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쓸지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선거에 관한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의견을 쓰는 데 있어서 모조리 실명확인을 의무화해야 될 그런 필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선거에 관한 의견

개인의 문제로 출발했는데 사실은 인터넷공간에서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훨씬 큰 문제로 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터넷에 일정한 의견을 올리는 사람은 반드시 실명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면 과태료든 뭐든 제재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를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좀더 심층적으로 전반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은 논의하도록 하되 이번에 한해서는 유시민 위원 안 정도로 자율적으로 인터넷언론사들이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제도를 두도록 권고하고, 다만 그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방법은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유시민 위원의 제3안이 당초에 흑색선전을 없애겠다는 취지와 또 하나의 다른 취지 그러니까 인터넷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두루두루 고려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안으로 합의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희룡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말씀하십시오.

○원희룡 위원 인터넷 실명제는 범개협에서 이미 다 합의가 돼서 왔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원래 다른 당들은 전자서명까지 도입하자는 게 당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 경제적인 검토 그리고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줄이는 방안을 찾자 그렇게 해서 현재 가능한 방법 중에서 가장 침해가 적은 방법을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천정배 위원님이나 유시민 위원님이 바로 증인이십니다.

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계로는 몇 시간에 해당하는 토론을 했었고 인터넷언론사들을 상대로 실명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벌칙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글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

는 회사들에 대해서 실명확인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공신력 있는 거의 모든 인터넷사이트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실명확인프로그램을 모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부나 신용정보기관들이 실명확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들에게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해주려고 해도 법상 근거조항이 없어서 해 주면 불법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선거법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추출한 자료, 그다음 신용정보기관들에서 1인당 10원 정도로 유료 포털서비스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명확인서비스를 선거에 관한 보도를 하는 인터넷사이트들의 실명게시판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집어넣은 것이고, 유시민 위원의 안에서도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서 실명확인프로그램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이미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사들이 다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법상에서 의무조항을 두는 한은 형벌조항도 아니고 과태료조항을 두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현 상태대로 방치하자는 의견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공명선거라는 공익을 놓고서 최소 필요한 규제와 제재방안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우리 사회 일각을 충분히 대변하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반대의견을 계속 말씀하신다면 표결을 하는 것은 따라 주셔야지,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그동안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은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張誠源 위원님이 계시다가 금방 나가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각 당 간사들께서는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위원이 이야기한 자율적·선언적 규정만 두는 안과 원희룡 위원의 수정안인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안 이 2개 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 위원의 자율적·선언적 규정만 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원희룡 위원의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두 번째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개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각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제안된 것인 만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추가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중 일부 체계·자구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